

## 水道誌 編纂委員會 規程

(制定施行 1993. 8.13)

第1條(目的) 上下水道の 技術·水質·管理에 關한 情報의 傳達과 水道分野에 從事하는 水道關係人의 意思交流를 위한 水道誌發刊을 向上된 編輯을 圖謀하기 爲하여 水道誌編纂委員會를 設置運營하고자 함에 目的이 있다.

第2條(定義) 이 規程에서 韓國水道協會(이하協會라한다) 水道誌編纂委員會(이하委員會라한다)라함은 水道誌의 編輯普及을 遂行하는 組織을 말한다.

第3條(委員會) ① 委員會에 委員長 1人과 主幹委員 1人을 포함하여 7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.

② 委員은 學界와 業界에서 多年間 編輯經驗이 있는자 또는 上下水道知識이 豊富한 者를 會長이 先任委囑하고 協會理事會(이하理事會라한다)의 追認을 받는다.

③ 委員長은 會長이 指名하며 主幹은 協會 副會長이 兼任한다.

④ 委員長, 主幹委員과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.

第4條(編輯) 水道誌의 編輯은 主幹인 委員 指揮下에 編輯하고 水道技術과 實務, 統計, 調査된 水道情報와 社會一般情報등 水道業務修行에 必要한 資料를 多樣하게 收集하여 委員會의 討論을 거쳐 採擇揭載한다.

第5條(小委員會) ① 委員會의 編輯業務를 圓滑히 하기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小委員會를 들 수 있다.

② 小委員會에는 3人以內의 委員을 두고 委員長이 指名한다.

第6條(實費支辨) 小委員會의 委員이 編輯, 計劃, 蒐集活動에 必要한 旅費交通費등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.

### 附 則

이 規程은 協會理事會의 議決로 效力을 發生한다.